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19 발의연월일: 2021. 2. 1.

발 의 자:심상정·배진교·류호정

강은미 · 장혜영 · 강민정

이수진 • 이은주 • 권인숙

양정숙 · 조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 보상 규정이 있으나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 의료기관 및 입원 격리된 사람, 오염인정 지역의 소독 등에 한정되어 있음.

즉,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 보상,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 지원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함.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을 계기로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빈약하고 사각지대도 넓어 기존 사회 안전망으로는 국민의 손실과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특별법으로 보상과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은 집합제한 조치 이상의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감염병 재난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하고 피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안 제3조).
- 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염병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를 둠(안 제4조).
- 라.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를 지님(안 제6조).
- 마.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피고용인 급여, 차임,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음. 또한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등은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구직급여하한액 범위 내의 금액을 보상받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바.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보장액 보상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귀속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70% 범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통제방역 단계 기간의 영업이익이 위 범위에 이르도록 보전받음(안 제13조).
- 사. 국가는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안 제14조).
- 아. 피해 지원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피고용자로서 고용이 단절된 경우(안 제15조), 일반 소상공인 등으로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안 제16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안 제18조), 그리고 수업 변경, 중증장애인 지원, 아동과 요양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입은 피해(안 제19조) 등에 적용함.
- 자. 국가는 감염병으로 인한 전체 국민의 가계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0조).
- 차. 국가는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하며,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카. 이 법의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을 말한다.
- 2. "통제방역 단계"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조제1항에 따른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서 집합제한 이상 의 행정명령이 취해지는 단계를 말한다.
- 3. "소상공인 등"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 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4. "손실"이란 통제방역 단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발생한 영업이익(추계신고자는 사업소득 을 기준으로 한다)의 감소를 말한다.
- 5. "고정비용"은 소상공인 등의 영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피고용인 급여, 차임, 공과 금. 통신요금과 영업외비용 중 금융이자를 말한다.
- 6. "국민이 입은 피해"란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이 아닌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 기간에 영업, 학습, 돌봄 등에서 입은 피해를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통제방역 단계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감염병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 ①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감염병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보상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 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

된 보상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보상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손실 보상 및 보상금액 등의 사항
- 2. 피해 지원 및 지원금액 등의 사항
- 3.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의 관리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④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보상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손실 보상의 집행 등의 사항
- 2. 피해 지원의 집행 등의 사항
-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⑤ 보상지원위원회는 산하에 손실보상소위원회와 피해지원소위원회를 둔다.
- ⑥ 그 밖에 보상지원위원회, 손실보상소위원회, 피해지원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다.

제2장 손실 보상

- 제6조(소상공인 등의 손실 보상) ① 소상공인 등은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를 지니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 생한 손실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보상한다.
 - ② 국가는 우선 소상공인 등에게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고 정비용과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제12조에 따른 금액을 제공하고, 이 후 당해연도 귀속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수준을 보전한다.
- 제7조(피고용인 급여 보상)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이 영업의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제1 항의 휴업수당에 준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받는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 수준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차임 보상) ① 임차인이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등인 경우, 임 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차임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때 임대인은 전체 차임의 30%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손실보상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임차인이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대

인은 차임의 1/2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때 임대인은 전체 차임의 2 0%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손실보상 받을 권리를 지닌다. 다만, 집합제한 대상이지만 보상지원위원회가 업종 특성상 손실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임 감면의 비율을 인상할 수 있고, 그 기준과수준은 보상지원위원회가 정한다.

- 제9조(공과금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집합금지 대상 소상 공인 등에게 공과금을 면제하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에게는 공과금의 1/2를 감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과금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로한다.
- 제10조(통신비 감면)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등에게 통신비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에게는 통신비의 1/2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국가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미청구액을 고통 분담의 취지에서 분담하며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금융이자 감면) ① 금융기관은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등에게 대출금의 금융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에 게는 대출금의 금융이자의 1/2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가와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미청구액을 고통 분담의 취지에서 분담하며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소상공인 등의 최소생활보장) ①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등은 통제방역 단계 기간에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의 금액을 제공받는다.
 - ②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제방역 단계 기간에 최소생활보장을 위해「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의 금액을 제공받는다.
- 제13조(소상공인 등의 영업이익 보전) 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보 상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귀속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70% 범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통제방역 단계 기간의 영 업이익이 위 범위에 이르도록 보상액을 지급한다.
 - ② 보상액은 일일기준으로 당해연도 상용근로자 평균 월임금총액(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을 넘을 수 없다.

제3장 피해 지원

- 제14조(국민의 피해 지원) ① 국가는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한다.
- 제15조(피고용인 실업 지원)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이 단절되었으나 고용보험 구직급여가 적용되지 아니한 자는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원 받는다. 이 경우 지원 기간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6조(소상공인 등 매출 지원)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제 2조제3호의 소상공인 등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자는 감소액의 1/2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과 지원 수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7조(소상공인 등의 차임 연체 등 보호) 임대인은 통제방역 단계에서 제2조제3호의 소상공인 등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청구할 수 없고, 차임 체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종사자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용노동자는 전년 동월 대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액의 1/2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이 경우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9조(일상생활의 피해 지원) ① 국민은 통제방역 단계에서 일상생활에서 입은 피해를 지원받는다.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에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며, 지원 기준과 수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1. 비대면 교육 등 수업 변경
- 2. 중증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 돌봄
- 3. 초등돌봄, 지역아동돌봄, 치매돌봄 등 보육과 요양돌봄
- 4. 그 밖에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 제20조(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국가는 감염병으로 인한 전체 국민의 가계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하여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원 마련

- 제21조(재원 마련) 국가는 제2장과 제3장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22조(국채 발행) 국가는 제21조에 의해 국채 발행이 필요할 경우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 제23조(특별재난연대기금) 국가는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며, 이를 위하여 특별재난연대세 등의 목적세 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제2장의 손실 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